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제6조)
-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직업교육훈련 실시
4. 인턴취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6.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